

# 물에 대한 권리와 한국의 수권(水權)



**이 영근 ▶▶▶**  
미래자원연구원 연구위원  
yiyk08@gmail.com



**박 성 제 ▶▶▶**  
미래자원연구원 원장  
psungje@gmail.com



**류 시 생 ▶▶▶**  
미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isaeng@gmail.com

## 1. 머리말

물과 권리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에 대한 인권이 주된 논점의 핵심이 되고 있다. 물 기본권(basic right to water)에 대한 논의 역시 대부분 물과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물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가 간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의 혹은 선언문의 형식으로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문서가 채택되었다. 한편 UN은 일반적인 견해(General Comment)<sup>2)</sup>라는 형식으로 2002년에 물에 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The right to water”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 있어서도 물에 대한 권리의 정책적인 불충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본문에서는 UN이 채택한 물과 권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의 논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의 논점은 대부분 수리권과 관련된 문제로 집약이 되지만, 이는 물을 이용하고 허가하는 제도적인 틀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 및 절차가 주로 논의된다. 따라서 수리권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김성수(2012), 물 기본권, 2012 춘천국제물포럼 논문집, p.523.

2) General Comment No.15(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2/11) (20 January 2003). 이 문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견해로서, UN경제사회이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제29회기에 작성하여 채택되었다.

## 2. 물에 대한 권리의 일반적 견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본 규약)」<sup>3)</sup>은 그 자체가 국제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규약 당사국만을 구속하지만, 본 규약은 구속적인 성격에 있어서 보다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 견해는 본 규약의 12조와 13조에 대한 위원회의 보조적인 해석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분야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상기의 12조와 13조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 견해는 전부 6개의 장 및 6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물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ater)

- I. 서론
  - 물에 대한 권리의 법적 기반
  - 물과 협약상의 권리
- II. 물에 대한 권리의 규범내용
  - 폭넓게 적용되는 특별한 사항
- III. 체약국의 의무
  - 일반적인 법적 의무

3)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 규약 혹은 A규약), 발효일: 1976년, 당사국 수: 160, 대한민국 적용: 1990년(다자조약 제1006호).

국제적 의무
핵심적 의무
IV. 위반(violations)
V. 국내차원의 실시
입법, 전략 및 정책
지표 및 표식(indicators & benchmarks)
구제 및 책임(accountability)
VI. 국가 이외 주체의 의무

※ 단, 세부항목에 대한 목차는 생략함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물에 대한 권리는 “누구든지 자신 및 가족을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하며 만족할 수 있는 물을 취득하고, 또한 물에 대한 신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타당한 가격이어야 함을 보증한다. 안전하고 적절한 양의 물은 갈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고 비위생적인 물에 의한 질병의 위험을 저감하며, 소비나 요리 등 개인과 가정의 위생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기술은 최근 물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정책과 일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의 대외협력사업과도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가 되는 가족과 의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규약에 대한 위원회의 권위적인 해석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본 규약 자체가 계약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국내적인 효력을 가진다든지, 정부가 법적인 준비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sup>6)</sup>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권은 형식적으로 대체로 충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본 견해에서는 물과 권리를 자유와 자격의 양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유에는 물권리의 향수에 필요한 현재의 물공급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권리, 그리고 물공급이 자의적으로 차단 혹은 오염되는 등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자격에는 사람들이 물의 권리를 향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물공급 관리 시스템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sup>7)</sup> 물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제 요소는 인간의 존엄, 생활, 건강에 있어서 적절하여야 하며, 적절한 물은 단순히 양적 문제나 기술적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물이 경제재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에 위구심을 표현하며, 물을 사회적·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77년 Mar del Plata에서 개최된 UN 물회의가 채택한 행동계획에서 “발전단계 및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질 및 양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에 상당하는 음용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후 복수의 국제문서가 이러한 권리를 명기하였지만,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재로서 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을 경제재로 취급하는 견해는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물 가격을 저하시켜 사회적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견해를 배경으로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4) General Comment No.15, *op. cit.*, para. 2.

5) Grigg, Neil S., *Water Resources Management: Principles, Regulations, and Cases*, McGraw-Hill, 1996, pp.501-506.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혹은 B규약)」과 더불어 국제인권규약의 하나 인 본 규약은 B규약이 계약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권리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것을 약속하는(undertake)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2조).

7) General Comment No.15, *op. cit.*, para. 10.

Agenda 21과 제2회 세계물포럼 선언에서는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헤이그 각료 선언의 경우, “모든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물을 관리하고, 제공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 서비스의 가격결정을 추진”할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재로서의 물 개념은 물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저가의 물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물에 대한 접근성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선언 등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물에 대한 권리에의 언급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물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의 개선 및 국제적인 연대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물에 대한 권리와 물산업을 연계하여 서비스 및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바로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최혜국대우(Most Favour Nation) 원칙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따른 GATT/WTO 시스템이 그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체계는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WTO에 의한 자유무역화의 효과로서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물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의해 이용자의 물에 대한 권리(혹은 인권)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GATS 규정에 정합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8)</sup>

물산업 및 물관련 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진척되

는 가운데 GATT/WTO 법체계의 무역자유화 논리와 의 정합성을 가지는 새로운 전략이 요청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구체성을 가진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국내적인 사항과 경제재로서 물을 취급하는 입장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선언과 WTO GATS와의 정합성을 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에 대한 권리와 경제재 사이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반적 견해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권리의 행사가 곤란한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하여 체약국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여성, 아동, 소외계층, 선주민, 난민, 망명자, 국내난민, 이동노동자, 죄인, 그리고 구류자 등에 대한 배려가 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여성, 아동, 농촌지역 및 도시 빈민지구, 선주민, 방목민 혹은 유랑민 등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sup>9)</sup>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약국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적의무, 특수한 법적의무, 준수 의무, 보호의무, 이행의무, 국제적 의무, 기본적 의무 등 7개의 의무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sup>10)</sup>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sup>11)</sup>

한편 국가 차원에서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 전략 및 정책에 대하여도 본 규약에 합치하도록 “입법조치 기타 모든 적당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2)</sup> 본 규약의 경우 우

8) 波多野英治(2008), 水に対する權利とWTO-外国事業者による水サービス提供とGATSとの關係を中心に, 横浜国際社会科学硏究, 第12卷4・5号, p.75.

9) General Comment No.15, *op. cit.*, para. 16.

10) *Ibid.*, paras. 17-38.

11) *Ibid.*, paras. 39-44.

12) *Ibid.*, para. 45.

리나라는 1990년 3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7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단지, 상기와 같은 의무 사항 및 실시조치에 대하여 본 규약과 어느 정도 높은 만족도를 가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관련 국내시책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물관련 해외사업 역시 물산업과 물관련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체약국 외의 의무를 가지는 기관으로 WHO, FAO, UNICEF, UNEP, UN-HABITAT, ILO, UNDP, IFAD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WTO, IMF,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의 협력을 아울러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십자사, UNHCR, WHO, UNICEF를 비롯하여 NGO의 역할을 강조하여, 물 취약계층에 대한 일층의 배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일반적 견해가 이미 10년 전인 2002년에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체약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물과 권리를 바라보는 2가지의 커다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에 대한 권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견해를 비롯한 각종 국제 선언 등을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체계와 국제경제동향 등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에 있어서 수권의 전개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수리권과 관련된 논의 혹은 위에서 언급한 개발도상국의 물과 인권에 관한 논의로 점철된다. 우리나라의 수리권 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습이 법제화되어 「민법」에 의해 규정되었다(법 제231조-제236조). 농민은 영농행위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천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으며, 타인의 용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용수권은 관행상 보장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하천법」에서는 기득하천사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하천수의 사용이 허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제50조).

표 1. 우리나라 수리권 관련 법령

법 률 명	제 정 일(최근개정일)	주 요 내 용
민 법	1958. 2. 22 (2012. 2. 10)	- 민사상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을 규정 - 물권, 채권, 상속 등에 따른 민사상의 권리, 계약 등에 대하여 규정
하천법	1961. 12. 30 (2012. 1. 17)	-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하천관리의 적정목적 - 하천의 관리 보전과 공용부담, 이·치수에 관한 기본법
소하천정비법	1995. 1. 5(2012. 3. 21)	- 소하천의 정비/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법)	2000. 3. 29 (2011. 5. 30)	- 댐의 건설·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생활의 발전을 도모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12. 4 (2011. 4. 12)	-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수도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	1990. 8. 1 (2012. 2. 1)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2000. 7. 11 (2008. 6. 24)	-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관리 및 정비계획, 재해방지 대책 등 하천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3) Ibid., paras. 60-61.

이와 같은 수리권 체계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 및 실무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과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물에 대한 권리는 법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9조-1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3조).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하천의 적정관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및 제49조). 이 외에도 물에 대한 권리를 추론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술된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는 물을 보호해야 하며, 건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무의 주된 목적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국민생활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현실점에서 거의 달성되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법제상 국민은 기본권적 관점에서 그 이상 물에 대한 권리의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 복지 및 물 기본권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물관련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갈등보다는 주로 물값 혹은 사용료와 관계된

민사형태의 분쟁을 비롯하여, 취수지점의 이전에 따른 상하류 지역분쟁, 댐건설을 둘러싼 수몰주민 보상의 문제 등 대부분 금전적인 사항에 관련된 갈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댐건설에 따른 환경의 파괴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규모면에서 보면 크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수리권 분쟁이 물을 둘러싼 권리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은 현 수리권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적인 이해관계나 특정기관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물관리기본법(안)」 등 새로운 통일 수법을 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물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 물 권리의 주장, 물 복지의 정비에는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국민의 책임과 그것을 위반했을 시의 제재가 명시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지하수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인격권(人格權)’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수원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질을 확보할 권리로서 ‘맑은 물 향수권(享受權)’을 권리론으로써 설명하는 사례이다. 즉, 인격권으로서 맑은 물 향수권의 개념은 ‘신체권’으로서의 맑은 물 향수권과 ‘평온생활권’으로서 맑은 물 향수권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 질과 양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적절한 질과 양의 음용 및 생활용수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박탈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sup>14)</sup> 이와 같은 인격권의 제기는 이미 기본적인 물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보다 고

14) 宮崎淳(2011), 水資源の保全と利用の法理, 成文堂, pp.350-353.

차원적 형태의 물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구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환경권 및 생활권과 연계하여 물과 인격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물은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는 있지만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즉,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인간에게 때로는 대홍수를 때로는 대가뭍의 시련을 주기도 한다. 물은 인간의 생활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따라서 물을 빼앗는 것은 생존권의 부정을 의미한다.<sup>15)</sup> 일반적 견해는 모든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특정 기

관으로부터 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물에 대한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규정과 그에 따른 책임규정을 도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물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은 지금까지 지루한 논쟁의 대상거리였던 조직개편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물과 인간의 속성에 중점을 두고 “물의 大哲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성수(2012), 물 기본권, 2012 춘천국제물포럼 논문집, pp.519-526.
2. 김정인(2012), 물 인권에 국제적 현황, 2012 춘천국제물포럼 논문집, pp.485-517.
3. 김종원(2012), 물 복지와 물값, 2012 춘천국제물포럼 논문집, pp.527-544.
4. General Comment No.15(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2/11) (20 January 2003).
5. Grigg, Neil S., *Water Resources Management: Principles, Regulations, and Cases*, McGraw-Hill, 1996.
6. Salman M. A. Salman, *The Human Right to Water: Legal and Policy Dimensions(Law, Justice and Development)*, World Bank, 2004.
7. 波多野英治(2008), 水に対する権利とWTO-外国事業者による水サービス提供とGATSとの関係を中心に, 横浜国際社会科学研究所, 第12巻4・5号, pp.75-97.
8. 宮崎淳(2011), 水資源の保全と利用の法理-水法の基礎理論, 成文堂.

15) Salman M. A. Salman, *The Human Right to Water: Legal and Policy Dimensions(Law, Justice and Development)*, World Bank, 2004, p.3.